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4 선고 2020가합54083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

피고1. A

2. B

3. C

변론 종결2021. 9. 9.

판결 선고2021. 10. 14.

주 문

1. 피고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,379,134원 및 그 중 8,346,159원에 대하여는 2020. 5. 23.부터, 9,032,975원에 대하여는 2020. 8. 26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20. 1. 1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C는 피고 A에게 제주지방법원 2020. 1. 17. 접수 제5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,379,1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12. 20. 주식회사 D(이하 'D'라 한다)와 사이에 보증금액 510,000,000원, 대출금액 600,000,000원, 보증기한 2018. 12. 20.(이후 2019. 12. 20.으로 변경)의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D가 대출금을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A,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,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, 이전 및 행사에 든 법적절차비용,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.

다.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. 1. 17.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C에게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중소기업은행은 2019. 12. 30. 원고에게 'D가 2019. 12. 27.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'는 취지로 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,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20. 3. 31. 중소기업은행에 518,084,8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마.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2020. 6. 3. 391,000,000원, 2020. 6. 4. 109,000,000원, 2020. 6.

12. 18,084,892원 합계 518,084,892원을 변제받았고, 그 중 517,961,240원을 대위변제금의 잔존 원금 전액인 517,961,240원¹⁾ (= 당초 원금 518,084,892원 - 2020. 5. 14.자 송달료 등 환급금 123,643원)에 충당하였다.

바. 한편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보전 내지 행사와 관련하여 5,266,350원의 법적절차비용이 발생하였는데, 피고 A이 변제한 518,084,892원 중 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잔존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123,643원과 2020. 4. 1.자 송달료 등 환급금 42,378원이 위 법적절차비용에 충당되어 결국 법적절차비용은 5,100,329원(= 5,266,350원 - 123,643원 - 42,378원)이 남게 되었다.

사. 또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추가보증료 3,245,830원[= 보증금액 510,000,000원 × 2.3% × 101(= 최종 변경된 보증기한 다음날인 2019. 12. 21.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20. 3. 30.까지의 일수)/365]이 발생하였다.

아. 그리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확정 지연손해금 9,032,975원(= ① 2020. 5. 14. 환급된 123,643원에 대한 2020. 4. 1.부터 2020. 5. 14.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1,485원 + ② 2020. 6. 3. 변제된 391,000,000원에 대한 2020. 4. 1.부터 2020. 6. 3.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6,773,059원 + ③ 2020. 6. 4. 변제된 109,000,000원에 대한 2020. 4. 1.부터 2020. 6. 4.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1,911,966원 + ④ 2020. 6. 12. 변제된 17,961,249원에 대한 2020. 4. 1.부터 2020. 6. 12.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346,465원) 또한 발생하였다.

자. 결국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17,379,134원(= 법적절차비용 5,100,329원 + 추가보증료 3,245,830원 + 확정 지연손해금 9,032,975원)이 남아 있다.

[인정근거]

피고 A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, 13 내지 17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피고 B, C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2. 피고 A,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으로 17,379,134원(= 법적절차비용 5,100,329원 + 추가보증료 3,245,830원 + 확정 지연손해금

9,032,975원) 및 그 중 8,346,159원(= 법적절차비용 5,100,329원 + 추가보증료 3,245,830원)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20. 5. 23.부터, 확정 지연손해금 9,032,9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20. 8. 26.부터[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,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(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),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위 피고들에게 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]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고,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다.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C는 피고 A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,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강민성

판사정경희

판사정덕기

별지

1) 정확히는 517,961,249원인바, 원고가 9원은 절사한 것으로 보인다.